

14. 현장실습학기제

가. 목적: 학칙시행세칙 제17조(학점인정)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산·학 간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재학 중 학점 취득 및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

나. 강좌 개설

- 1) 현장실습학기제 강좌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처장에게 개설을 요청하고 총장이 승인하여야 한다.
- 2) 개설계획서 및 개설신청서 포함 내용: 현장실습학기제 강좌 개설을 위해서는 개설계획서를 작성하고, 실습기관 선정, 실습에 관한 협약 체결, 지도교수 선정 등 개설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교무처장에게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다. 실습기관 선정 기준

- 1)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계획을 갖추고 있는 기업(기관)
- 2)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(기관)
- 3)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·설비·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는 기업(기관)
- 4) 학생의 전공 지식 및 실무 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 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, 지도가 가능한 기업(기관)
- 5)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·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하는 기업(기관)
- 6)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, 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(기관)
- 7)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업(기관)

라. 대상자(실습생) 선발 및 수강신청

- 1) 자격: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. 다만, 해당 학기 졸업 예정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.
- 2) 신청서 제출: 현장실습학기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현장실습학기제 개시 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inSTAR를 통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신청한다.
- 3) 대상자 선발: 본교와 실습기관의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발한다.
- 4) 수강신청
 - 가)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은 정규 학기 또는 계절 학기 수강신청 기준 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
 - 나)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. 다만, 원격 강좌 및 논문에 한정하여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과 동시에 수강할 수 있다.
 - 다) 정규 학기 중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된다.

마. 교육과정 편성

- 1)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6시간~8시간/1주 30시간~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- 2)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및 시기에 따라 학기제(정규 학기 중 실시) 및 계절제(방학 기간 중 실시)로 구분하고,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지급액, 교육 시간 등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다음과 같이 교과 과정을 편성한다.

구분	교과목 편성	실습 기간	인정 학점		비고
			2015학번까지	2016학번부터	
학기제 (1학기/2학기)	표준국내현장실습(3개월)	3개월 (60일 이상 출석)	15학점	13학점	
	표준국외현장실습(3개월)				
	표준국내현장실습(3개월2주)	3개월 2주 (70일 이상 출석)	17학점	15학점	
	표준국외현장실습(3개월2주)				
계절제 (하계/동계)	표준국내현장실습(1개월)	1개월 (20일 이상 출석)	3학점	3학점	
	표준국외현장실습(1개월)				
	표준국내현장실습(2개월)	2개월 (40일 이상 출석)	6학점	6학점	
	표준국외현장실습(2개월)				

- 3) 현장실습학기제는 재학 중 최대 32학점(2015학번까지는 36학점)까지 이수할 수 있다.
- 4) 계절제(계절 학기) 현장실습학기제는 최대 6학점, 학기제(정규 학기) 현장실습학기제는 최대 15학점(2015학번까지 17학점)까지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은 다음 학기 성적장학금 혜택에서 제외한다.
- 5) 교육과정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**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른다.**

바. 이수

- 1) 현장실습학기제는 재학 중 최대 36학점(2016학번부터는 32학점)까지 이수할 수 있고, 성적표에 **표준국내현장실습, 표준국외현장실습으로 표시하며**, 지도교수가 전공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공선택 혹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.

사. 성적 평가

- 가) 교과목 성적은 학생 결과 보고서, 실습기관 평가표, 지도교수 방문지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- 나) 실습기관과 지도교수의 성적 평가 반영 비율은 7:3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) 최종 성적은 합격(P)/불합격(NP)으로 지도교수가 평가하고, 졸업 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 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.

아. 현장실습생의 준수 사항

1) 실습생 의무

- 가) 실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제출
- 나) 실습기관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
- 다)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 누설 금지
- 라) 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, 학과 사무실 및 지도교수에게 연락
- 2) 현장실습학기제 의무 위반자 조치: 학점 인정 불허 및 징계 조치
 - 가) 현장실습학기제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
 - 나)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 - 다)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
 - 라)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자.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운영

- 1)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에 개설하되 기관실습은 직전 학기 방학 중 실시
- 2) 사회복지현장실습(2-심화 실습)은 4학년 1학기에 개설하되 기관실습은 직전 학기 방학 중 실시
- 3) 사회복지취업체험은 4학년 2학기에 개설하여 학기 중에 실시